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16· 7· 5 조례 제1254호
일부개정 2019· 12· 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3· 11· 1 조례 제20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해당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천시 일자리 종합계획에 본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과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1. 면접컨설팅 등 취업면접 준비과정
2. 이력서용 증명사진촬영 비용
3. 면접 정장 등 대여
4. 면접스타일링(헤어·메이크업 등) 비용
5. 그 밖에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과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④ 시장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업과 청년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의 업무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3·11·1>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및 기업체,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